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“고독사”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,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고독사” 및 “사회적 고립가구”에 대한 정의 변경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
- 2) 조례 적용 범위 확대(안 제4조)
- 3) 지원 대상 범위 확대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임

2) 주요 내용

- 가) “고독사” 및 “사회적 고립가구”에 대한 정의 변경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
 -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“고독사”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함

나) 조례 적용 범위 확대(안 제4조)

-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하여 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

다) 지원 대상 범위 확대(안 제7조)

3) 검토 의견

-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사망자의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50대~60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,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음.
- 홀로 사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,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